

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제283호
의결년월일	2000. 3. 3 (제77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2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. 8. 31 법률 제6002호 및 99. 12. 31 대통령령 제16,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『정례회제도』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『○○○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』이 2000. 1. 17 경기도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며,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하기로 함(안 제4조)
-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며,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(안 제5조)

3. 제정조례안 : 별첨

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9조의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2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정기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한다.

②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회의수당”을 각각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]</p> <p>제2조(감사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p> <p>③~⑤(생략)</p>	<p>제2조(감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제1차 정례회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</p> <p>③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[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]</p> <p>제2조(정의) 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회의수당”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4조(보상금지급기준) ①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회기수당”.....</p> <p>.....회기수당....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보상금지급기준) ①(현행과 같음)</p>
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
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·도의원 당
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
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·도
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
한 금액

3. (생략)
②~③(생략)

1.
.....
.....회기수당.....

2.
.....회기수당.....
.....

3. (현행과 같음)
②~③(현행과 같음)